

제정 2020.04.09

개정 2022.02.25

개정 2026.05.11

『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』 이용약관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고객(이하 “고객”이라 합니다.)간의 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용어 정리)

- ① “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”(이하 서비스라 합니다.)라 함은 고객의 지시에 의해 원화에서 교환된 외화를 가족 및 지인(이하 수령인이라 합니다.)에게 선물하고, 수령인은 선물 받은 외화를 외화 현찰로 수령하거나, 원화로 바꾸기(현찰 팔 때 환율 적용) 또는 본인 명의 외화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- ② “채널”이라 함은 하나은행의 전자금융 환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.
- ③ “제휴사”라 함은 은행과 제휴계약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④ “선물받기 대기”라 함은 수령인이 선물 받은 외화에 대한 받기 거래를 인터넷 상에서 미완료한 상태를 말합니다.
- ⑤ “선물받기 완료”라 함은 수령인이 선물 받은 외화에 대한 받기 거래를 인터넷 상에서 완료한 상태를 말합니다.
- ⑥ “수령인 변경”이라 함은 지정한 수령인이 “선물 받기 완료” 전에 고객의 지시에 의해 새로운 수령인으로 변경 지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⑦ “선물 거절하기”라 함은 수령인이 선물 받은 외화에 대한 받기 거래를 거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
제 3 조 (서비스 신청)

- ① 본 서비스의 이용 신청은 은행이 별도로 지정한 채널에서 할 수 있습니다.
- ② 본 서비스의 신청 가능 통화는 은행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-약관-027 호(2026.03.16)

- ③ 본 서비스의 신청은 휴일 및 영업일 영업시간 외에도 가능합니다.
- ④ 본 서비스는 환전 신청 시점에 은행이 고시하는 '현찰 살 때' 환율을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화면에 명시된 환율(spread) 우대율을 적용합니다.
- ⑤ 선물하기 금액은 각 채널별로 1 일 통화별 환전 건당 최소거래단위 이상 ~ 미화환산 500 불 상당액까지 가능합니다. 단, 제 7 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물하기 금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 (거래 체결)

- ① 은행은 환전 대금 결제 확인 시 해당 서비스 신청 건에 해당하는 고유한 환전신청번호를 고객 및 수령인에게 전달합니다.
- ② 환전 대금 결제 후 환전이 완료되면 환전 취소가 불가합니다.
- ③ 서비스 신청 당일부터 30 일 이내 기간 까지만 선물 받기 거래가 가능하며, 31 일째에는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신청 채널을 통하여 외화로 반환됩니다.

제 5 조 (거래결과의 통지)

본 거래의 처리 결과는 고객 및 수령인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신저 프로그램(카카오톡 등)으로 통지합니다.

제 6 조 (외화 수령)

- ① "선물 받기 완료" 한 수령인은 해당 채널에서 외화수령점을 신청하고 영업시간 내(받기 당일포함) 외화 현찰을 수령할 수 있으며, 원화바꾸기(현찰 팔 때 환율 적용) 또는 본인 명의 외화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(단, 당행 채널 합산 1 일 미화환산 1 만불 상당액 이내, 전 제휴사 채널 합산 1 일 미화환산 1 만불 상당액 이내로, 당행 채널과 제휴사 채널의 한도는 별도 적용됨)
- ② 선물받기 금액은 당행 채널 미수령 잔액 포함 미화환산 1 만불 상당액, 전 제휴사 채널 미수령 잔액 포함 미화환산 1 만불 상당액 이내까지 보관 가능합니다.
- ③ 수령인이 "선물 거절하기"를 한 경우 외화는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반환되어 외화로 보관됩니다.

제 7 조 (서비스의 제한)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-약관-027 호(2026.03.16)

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합니다.

1. 하나머니 서비스¹⁾ 및 제휴사 채널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{1일 원화 1백만원(전 제휴사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), 월간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(매월 1일~말일), 연간 미화환산 3만불 상당액(1.1~12.31) 이내}
2.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{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, 월간 미화환산 3만불 상당액(매월 1일~말일), 연간 미화환산 10만불 상당액(1.1~12.31) 이내}

제 8 조 (약관의 효력)

본 약관은 이용하는 각 채널별로 최초 1회의 서비스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.

제 9 조 (준용 규정)

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외환거래 기본약관』, 『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, 『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』, 『하나머니 서비스 이용약관』, 『외국환거래법』, 등 상관례에 따릅니다.

¹⁾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하나머니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)를 적립·충전·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. 하나카드는 고객의 환급 요청에 따라 하나머니를 환급하여 하나은행에 지급하며, 하나은행은 수취한 원화(환급금)를 외국환으로 환전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.